

파푸아뉴기니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파푸아뉴기니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벌채권(Timber Authority) *[발급기관: 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s] - 산림개간권(Forest Clearing Authority, FCA) *[발급기관: National Forest Board]	벌채권, 산림개간권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17.10월 기준 산림 3.7만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하는 서류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수출허가서(Export Permit)	수출허가서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 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벌채권(Timber Authority)]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ESTRY ACT 1991

Act, Sec. 87
Reg. 159

FORM 155

TIMBER AUTHORITY FOR DOMESTIC PROCESSING UP TO 5,000 CUBIC METRES
PER YEAR

Authority No.: TA [REDACTED]
Project Area Name: [REDACTED] TIMBER AUTHORITY

I, Hon. Kila Hada, Chairman of the Committee responsible for forestry matters in the **Central** Provincial Government by virtu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87 of the Forestry Act 1991 and all other powers me enabling, hereby grant a Timber Authority to [REDACTED], a registered forest industry participant (Registration No. FI [REDACTED]) (referred to in this Authority as "the holder").

This Authority authorises the holder to carry out forestry operations in the project area described, and outlined in red on the map in Schedule 1 ("the Project Area") for the term specified in Schedule 2 subject to the Act an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 (a) the amount of allowable cut shall be as specified in Schedule 3; and
- (b) the holder must, within 21 days, lodge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98 of the Act for the amount specified in Schedule 4 (and if the performance bond is not lodged then this Timber Authority is void and of no effect); and
- (c) the holder must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Schedules hereto.

Dated this 15th day of

JULY
~~JUNE~~

2015.


.....
(Signature of Chairman)

SCHEDULE 1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estry Act 1991.

Act, Sec. 90B(8).
Reg. 263

Form 242

FOREST CLEARING AUTHORITY TO CARRY OUT A LARGE SCALE CONVERSION OF
FOREST TO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DEVELOPMENT.

Forest Clearing Authority No: FCA [REDACTED]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Development Project;

[REDACTED] INTEGRATED AGRICULTURE PROJECT, KAIRUKU DISTRICT, CENTRAL PROVINCE.

Pursuant to Section 90B(8) of the *Forestry Act* 1991, and all other powers it enabling, the Board hereby grants a Forest Clearing Authority to [REDACTED] [FI [REDACTED]] ("the Holder")

This Authority authorises the holder to carry out a large scale forest clearance for commercial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development within the **10,530 hectares** of land area described, and outlined in red on the map in Schedule 1 ("the Project Area") for the term specified in Schedule 2 subject to the Act an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a) the holder shall, within 21 days, lodge a performance bond¹ in accordance with Section 98 of the *Forestry Act* 1991 for the amount specified in Schedule 3.
- (b) the holder shall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Schedules herein.
- (c) the holder shall carry out the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land-use development plan and the approved implementation schedule contained in the holder's application for this Authority and as agreed to and as may be varied by the Board from time to time.
- (d) the holder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any Permit, License or other Authority relating to the project and with the provisions of all Environmental and other relevant laws of Papua New Guinea.
- (e) the holder shall comply with such other conditions as are specified in Schedule 4 hereto.

Dated this 27th day of March 2015.


.....
For the Board.

¹ If the Performance Bond is not lodged within 21 days and no application under Section 98(6) of the *Forestry Act* has been made within 21 days to the Board seeking an extension of time within which to lodge the Performance Bond then this Forest Clearance Authority is deemed void under Section 98(5) of the Act and thereby cancelled.

[수출허가서(Permit to Export)]



MINISTER FOR FORESTS

To: Manager
Customs Office
P.O. Box 215, MADANG
Madang Province.

CUSTOMS (Prohibited Exports) REGULATION
CHAPTER No. 101 (Reg. Sec:2)

Our file reference:

Wednesday, 29 October 2014

Export Permit No. [REDACTED]

I, Hon. Douglas Tomuriesa, MP and Minister For Forests hereby consent to the exports of the following forest produce.

Exporter: [REDACTED]
Producer: [REDACTED]
TP/TL/TA/LFA/FCA No: TA [REDACTED]
Project: [REDACTED]
Quantity (m3): 16.579 Sawn Kwi
Value (USD): 17,175.60
Species: As attached
Loading Ports: Madang
Vessel: Kokopo Chief
Departure Date: 23-Nov-14
Destination: Australia
Buyer: [REDACTED] BRISBANE, Australia
Export Licence:



*Hon. Douglas Tomuriesa MP,
Minister for Forests*

파푸아뉴기니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임업진흥원이 2017년에 수행한 '불법벌채목재 교역제한제도 표준 가이드 개발' 연구용역 자료입니다. 해당 국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되는 경우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최신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은 생물적,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여러 지역의 주민들이 공존하며 살아 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비전2050(vision 2050)'을 수립하였으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국의 천연자원을 활용한 빈곤 퇴치와 국민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불법벌채와 기후변화 문제들로부터 파푸아뉴기니 또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목재 산업(timber industry)은 오랫동안 불법벌채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파푸아뉴기니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FLEGT, 산림관리협의회(FSC), 국제산림인증연합 프로그램(PEFC)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는 목재 생산자, 수출업자들이 지역별로 시행되는 산림경영기준(Forest Management Standards)에 대한 준수의를 시장으로부터 인정받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를 거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를 준수할 경우, 생산자와 구매자 모두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제품을 거래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산림 현황

파푸아뉴기니의 천연 열대우림은 독특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넓은 면적에 분포하고 있어 국민의 생태학적,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국토는 46,400,000 ha 로 긴 해안선, 가파르고 높은 산악지역, 깊은 계곡으로 형성된 천연 열대우림(natural tropical rainforest)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80% 이상을 산림이 차지하고 있으며 전세계 상위 20개국에 포함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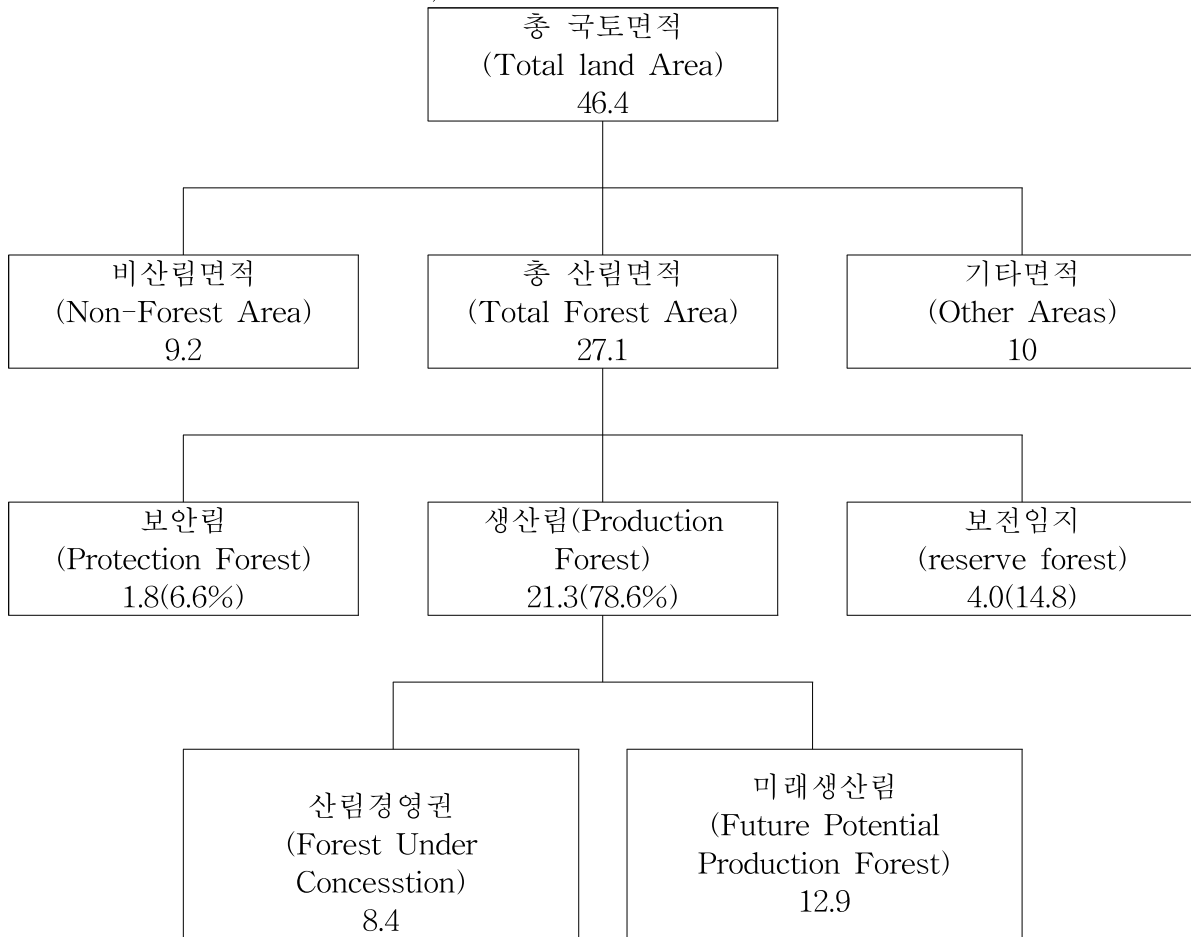
국가행정위원회(National Executive Council)는 2014년 산림을 "3미터 이상 높이의 교목(tree)이 10%를 초과하는 임관피복도(canopy cover)를 가진 1 ha 이상의 토지"로 정의하였습니다.

위의 정의에 따라 파푸아뉴기니아에는 약 27,100,000 ha의 면적이 산림으로 정의되며 열대우림 (rainforest), 산림(woodland), 사바나림(savannah), 관목(shrub)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산림(production forest)의 면적은 21,300,000 ha로 추정되며, 이 중 8,400,000 ha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2,900,000 ha는 미래생산림(future potential production forest)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표 20. 산림 구분

* 출처 : Hitofumi Abe, 2016

(단위 : 백만 ha)



파푸아뉴기니아의 산림은 산림조사와 지도화시스템(Forest Inventory & Mapping System, FIMS)과 호주연방과학원-파푸아뉴기니아정보시스템(CSIRO-PNGRIS) 간행물 제4호 (Hammermaster & Sauders 1995)에 따라 분류되어 있습니다.

산림지는 식생종류와 조림에 따라 용도별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식생종류(vegetation type)는 구조적 구성에 근거하여 분류되며 파푸아뉴기니아자원정보시스템 간행본 제4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산림분류상 12종류의 식생종류로 분류되며 산지침엽수의 보존가치가 높이 인정되어 ‘산지침엽수림(mountain coniferous forest)’이 추가되었습니다.

표 21. 산림 식생 분류

산림 종류	내용
저해발고 평지 및 선상지 산림 (Forest on Plains and Fans)	해발 1,000 m 미만
저해발고 고지대 산림 (Low Altitude Forest on Uplands)	해발 1,000 m 미만
저고도 산간산림 (Lower Montane Forest)	해발 1,000 m 이상
산간산림 (Montane Forest)	해발 3,000 m 이상
건기산림 (Dry Seasonal Forest)	파푸아뉴기니 서남부의 저강우지대(low-rainfall area, 1,800~2,500 mm)에 국한됨
수변림(Littoral Forest)	해변 또는 강가의 숲
천이계열 산림 (Serial Forest)	하천선(riverline), 상류(upper stream), 둔치(river plain), 화산폭발지대(volcano blast area)
습지림 (Swamp Forest)	습지지역(swamp area)
산림지대 (Woodland)	저고도 개방형 교목층(open tree layer)
사바나 (savanah)	뚜렷한 건기를 가진 저강우지역에 위치한 저고도(6 m 미만) 및 개방형 교목층
관목 (Shrub)	6 미터 이하의 관목 밀집지역
망그로브 (Mangrove)	해안선 지역 및 큰 강의 삼각주지역
산지침엽수림 (Mountain coniferous forest)	침엽수로 구성된 고지대 산림 (나한송과, Podocarpaceae)

파푸아뉴기니 지역 인구의 87%는 식량, 민간약품, 건축자재 등을 산림으로부터 제공받고 있어, 천연자원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환경을 관리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국토의 97%는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이 관례적 소유권제 지주경영시스템 (customary ownership land tenure system)을 기반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는 국가, 기업, 개인, 종교단체(천주교, 루터교, 연합교 등)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토지로부터 수확되는 자원에 대한 관례적이고 전통적인 소유권을 인정하며, 토지 그룹(land group)을 설립하여 산림자원을 경영할 수 있도록 토지그룹주식회사법(land group incorporation act)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개발과 경영은 산림법(Forestry Act)에 근거하며,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국가산림정책(National Forest Policy)과 국가산림개발 가이드라인 2009(2009 National Forest Development Guidelines)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은 파푸아뉴기니 국민총생산의 약 9%를 차지하며 인구의 약 7%가 산림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은 중앙정부와 주정부에서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목재산업을 담당하는 국가 주요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22. 산림 조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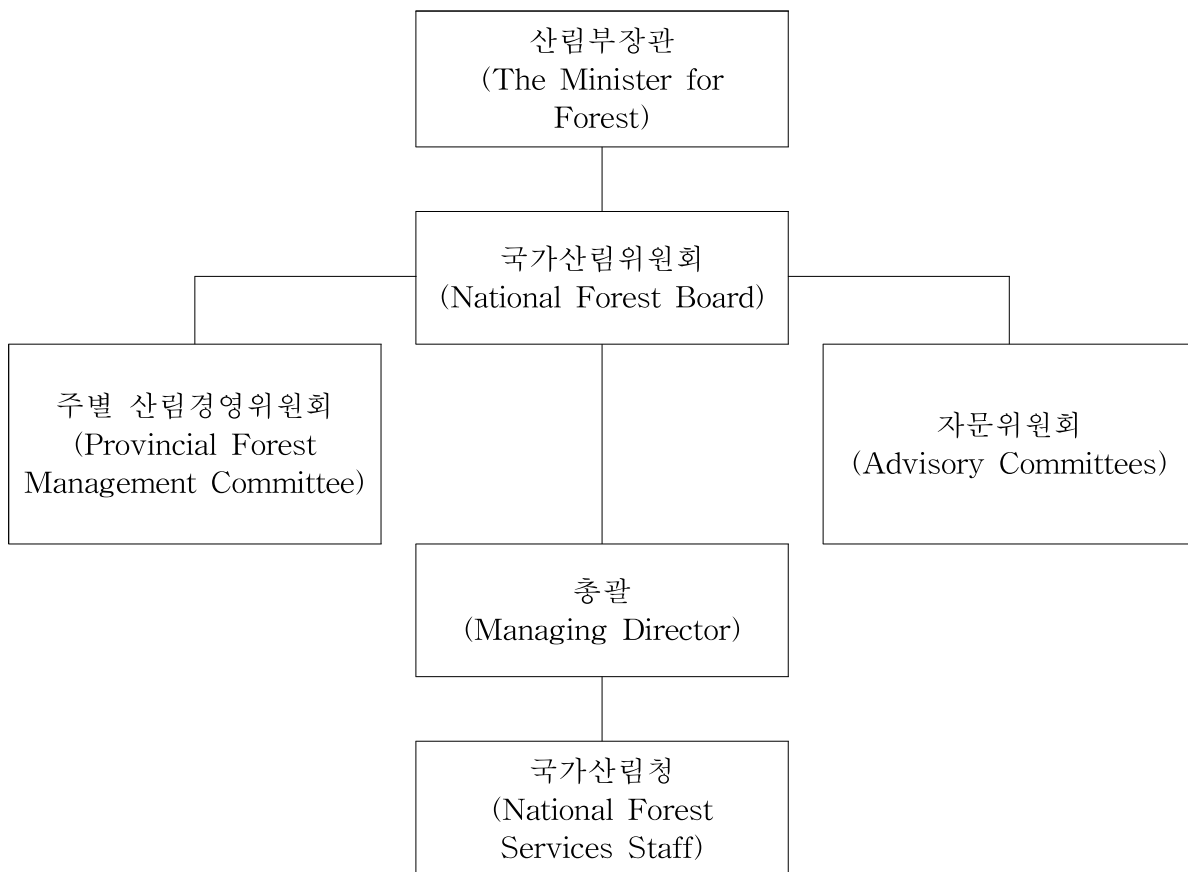


표 23. 주요기관 및 기관별 역할

기관명	역할
<p>파푸아뉴기니 산림부 (Papua New Guinea Forest Authority, PNGFA)</p>	<p>파푸아뉴기니 산림부는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와 국가산림청(National Forest Service)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림부는 산림법(Forestry Act, 1991)과 산림정책(Forest Policy, 1991)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p> <p>파푸아뉴기니 산림부는 국가, 지주, 산림관련 허가소지자 또는 개발업자간의 계약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준수되는지를 감독하며, 산림관련 정책을 개발·촉진합니다.</p>
<p>국가산림위원회 (National Forest Board, NFB)</p>	<p>국가산림위원회는 산림부의 권한을 행사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사안을 관리합니다.</p> <p>국가산림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산림관련 정책과 현안에 대하여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p> <p>국가 산림위원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 및 지방 정부기관(national and provincial government agencies), 산림 산업분야(forest industries), 국가여성위원회(national council of women), 시민단체(civil society), 토지소유지(landowner)를 대표하여 산림개발과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합니다.</p>
<p>주별산림경영위원회 (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s)</p>	<p>주별산림경영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국가산림위원회에 산림관련 사안을 제안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p> <p>파푸아뉴기니의 21개 주별로 산림경영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으며 각 위원회는 각 주 및 지방단위 정부, 지주,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p>
<p>국가산림청 (National Forest Service)</p>	<p>국가산림청은 산림부의 집행기관으로 파푸아뉴기니의 수도인 포트모레스비(Port Moresby)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사무소(5)와 주별사무소(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참고]

출처 :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은 총 33,559,000 ha 로 전체 국토면적의 7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¹⁾ 산림면적은 원시림(Primary), 기타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인공림(Plante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²⁾

- 원시림(Primary) : 17,599,000 ha(52.4%)
- 기타 천연갱신림(Other naturally regenerated) : 15,960,000 ha(47.6%)
- 인공림(Planted) : 0 ha

이 중 보존림, 보호림, 생산림으로 지정된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산림 : 8,758,000 ha³⁾
- 보존림 : 1,689,000 ha⁴⁾
- 보호림 : 1,796,000 ha⁵⁾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의 최우선 목표는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자원을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지역 사회 참여, 현재와 미래세대의 공동이익 개발을 위한 지속가능한 천연자원으로서 관리 및 보호하는 것입니다. 산림관련 법적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4. 산림 관련 법체계

(개정) 산림법(Forestry Act, 1991)	산림법은 토지소유지로부터 산림관련 권리의 취득, 산업분야 배분, 조림구간에서의 산림 활동 관리조직의 처리절차를 규정합니다.
산림 시행령(Forestry Regulation, 1998)	-

1)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5,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46,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3)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24,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4)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67,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p172,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p>국가산림정책 (National Forest Policy, 1991)</p>	<p>국가산림정책(National Forest Policy)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이용에 관한 청사진을 제공합니다.</p>
<p>국가산림계획 (National Forest Plan)</p>	<p>국가산림계획(National Forest Plan)은 1996년 파푸아뉴기니 국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자원에 대한 중앙·지방 정부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산림사업의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p>
<p>파푸아뉴기니 벌채규정 (PNG Logging Code of Practice, LCOP)</p>	<p>벌채규정은 벌채계획, 임도건설, 벌채활동, 벌채 후 활동, 폐기물관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사항을 규정합니다.</p>
<p>국가산림개발가이드라인 (National Forest Development Guidelines, NFDG 2009))</p>	<p>국가산림개발가이드라인은 파푸아뉴기니의 모든 산림관련 활동의 기본이 되는 국가산림계획의 목표와 주요 방향을 포함합니다.</p>
<p>파푸아뉴기니 산림부가 작성한 운영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은 위의 법적 체계가 시행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p>	
<p>벌채허가에 기반한 국가산림벌채기능을 위한 계획, 관리, 감독절차 매뉴얼</p>	<p>천연림에서의 산림활동을 위한 계획, 관리, 감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며 산림 작업계획(forest working plan), 연간벌채 계획(annual logging plan) 등에 관한 절차를 제시합니다.</p>
<p>원목 수출 매뉴얼</p>	<p>원목 수출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p>

표 25. 산림개발관련 법률 사항

실행 기관	법률 및 정책	감독활동
<p>파푸아뉴기니 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 헌법 (National Constitution) - 주정부 및 지방자치정부 기본법 (Organic Law) - 공공재정관리법 1995 (Public Finances Management Act) - 개발 계획 전략 2010 ~ 2030 (Development Plan Strategy) - 파푸아뉴기니 비전 2050 	<p>파푸아뉴기니의 지속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국가의 발전 로드맵을 제공합니다.</p>
<p>파푸아뉴기니 산림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림정책 1991 - 산림법, 1991(개정) - 산림법 시행령 1998(개정) - 파푸아뉴기니 산림부 원목수출 절차 1996 - 파푸아뉴기니 벌채규정1996 (Logging Code of Practice) - 파푸아뉴기니 내에서의 선택적 벌채에 관한 주요 기준을 포함한 천연림 벌채 계획 의 감독과 관리 절차서 - 사업 협약서(Project Agre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업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임업 참여자(Forest Industry participants, FIP) 또는 임업 컨설턴츠 (Forest Industry Consultants, FIC) 인증을 발급합니다.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벌채, 가공, 수출을 승인하거나 규제합니다. - 벌채허가를 위한 로열티, 임목 가격 등 다양한 형태의 수수료를 요청합니다. -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소유, 판매, 거래, 가공을 규제합니다. - 그 외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합법적 벌채 또는 수출시 준수 사항을 관리합니다.
<p>파푸아뉴기니 보전·환경· 보호부(PNG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Protection Author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법2000 (Environment Act) - 보전과 환경보호법2014 (Environment Protection Act) - 환경허가 (Environment Permit) - 동물상 보호 및 관리법1996 	<p>보전과 환경보호법은 개발 행위 (산림 포함)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리 기준을 제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 야생관리지역(Wildlife Management Area), 보호구역(reserves), 보호 지역(protected areas)과 같은 특정지역에서의 벌채 금지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생생물 관리법 (Wildlife Management) - CITES 2008 	<p>규제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거래에 관한 금지 및 규제사항
토지·국토계획부 (Department of Lands & Physical Plan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법(Land Act)1996 - 토지그룹법인법2009 (Land Group Incorporation Act) - 물적계획법1989 (Physical Planning Act) - 물적계획법 시행령1990 (Physical Planning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그룹의 설립 및 승인을 관리합니다. - 토지소유자로부터 관습적 권리의 취득관련 사항을 담당합니다. - SABL을 위해 관습적 소유자로부터 권리의 취득 관련 사항을 담당합니다.
기후변화 및 관리부 (Climate Change and Management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관리법2014 (Climate Change Management Act) - 산림 및 기후변화 실천계획 2009~2015 (Forestry & Climate Change Framework for Action) 	<p>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완화와 대응 조치들의 법적, 정책적 준수사항을 제공합니다.</p>
건설부 (Department of Work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유지법 1971 (Road Maintenance Act) - 도로유지법 시행령1973 (Road Maintenance Regulation) 	<p>도로건설계획, 도로기준 및 선형에 관한 준수사항을 제공합니다.</p>
국세청 및 관세청 (Internal Revenue Comission (IRC) & Custo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 관세율법1990 (Custom Tariffs Act) - 파푸아뉴기니 관세법과 금지법 	<p>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운송, 수출, 수입, 환적 관련 사항을 규제합니다.</p>
투자진흥청 (Investment Promotion Agen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법1974 (Investment Act) - 기업법1970 (Companies Act) 	<p>파푸아뉴기니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p>

자세한 사항은 파푸아뉴기니 통합 법규 홈페이지(www.paclii.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는 헌법을 통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헌법의 국가 목표 중 제4목표(the Fourth Goal)인 “파푸아뉴기니의 천연자원과 환경은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보전하고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 재조성(replenished)되어야 한다.”는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의 정책과 법안 입안을 위한 기본방침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최우선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자원을 재생가능한 자산으로 경영하고 보호한다.
2. 국가의 산림자원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파푸아뉴기니 산업 촉진, 국내 가공산업 촉진을 위해 사용한다.

파푸아뉴기니에서 천연 산림자원의 개발은 산림정책(1991)에 근거하여 추진되며, 산림법(1991, 개정), 산림법 시행령(1998), 국가산림개발 가이드라인(1993), 국가산림계획(1996)에 기반하여 관리합니다.

주요 환경관련기준(Environmental Key Standards), 벌채규정(Logging Code of Practice), 파푸아뉴기니 천연산림지역 내 벌채계획, 감독 및 관리 절차, 산림경영협약(Forest Management Agreeent)과 같은 기타 규정을 활용하여 준수 및 집행사항을 관리합니다.

벌채 허가 관련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1호)

파푸아뉴기니의 토지보유체계는 매우 복잡하며 특정 토지에서 자라는 산림은 기본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진 부족의 공동소유물이 됩니다. 벌채 또는 기타 산림자원을 이용한 제품생산, 재조림을 위해서는 파푸아뉴기니 산림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 및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산림의 관습적 소유주의 권리는 협의절차를 통해 인정되며 관습적 소유주의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그룹법인법(Land Group Incorporated Act, 2009)에 따라 설립된 토지그룹에게 부여됩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산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벌채, 운송, 가공, 목재제품의 수출을 포함한 임업 참여자(Forest Industry participants, FIP) 인증을 산림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합니다.

벌채허가(Timber permit)

벌채허가서를 소지한 자는 국가산림위원회와의 사업협약(Project Agreement) 조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35년간 산림경영과 벌채허가 사항을 보장받게 됩니다.

* 붙임 1.

산림부 장관은 산림법 제56조~제72조에 근거하여 32~34단계의 벌채허가 취득 및 배분절차를 실시하고 우선협상대상회사(preferred company)에게 벌채허가서를 발급합니다. 벌채허가 취득 및 배분절차는 개발단계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으로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유주와 주별 산림경영위원회가 해당됩니다.

5단계 취득절차(5-step acquisition process)는 관습적 자원 소유주들이 집중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와 산림경영협약(Forest Management Agreement, FMA)에 관한 동의 단계를 포함하며, 산림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27단계 배분절차(27-step allocations process)는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와 제안자 간의 사업협약(Project Agreement) 체결 전 개발조건조사(Development Options Study), 공공입찰에 대한 사업 공지, 사업가이드라인 수립, 개발제안서의 제출 및 평가, 사업협약 조건에 관한 협상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협약은 주로 중앙, 주 그리고 지방 정부에 지급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과 해당 사업의 생애주기(life span)동안 토지 소유주에게 제공되는 이익에 대한 협의결과를 포함합니다. 협상은 주별산림경영위원회(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s)가 주관하며, 사업의 개발 관련 사안이 명문화되어 포함된 사업협약(Project Agreement) 사항을 승인합니다.

업체는 산림부장관의 통지에 따라 벌채허가를 신청하며 환경법(Envrionment Act, 2000)에 따라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uncil)에서 발급받은 환경허가서(Environment Permit)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벌채는 파푸아뉴기니 벌채규정(PNG Logging Code of Practice)의 요구조건에 따라 선택적 벌채(selective logging)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벌채된 원목을 수출하는 경우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의 원목수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파푸아뉴기니의 목재산업(Timber Industry)은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벌채된 원목의 90%가 수출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산림법(Forestry Act)제216장(chapter 216), 산림법(개인거래, private dealings)제 217장에 근거하여 발급된 벌채허가(permit), 면허(licence), 벌채권리 구매계약(timber rights purchase agreements)과 거래 사항에 대하여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 해당 허가, 면허, 계약, 거래사항의 종료 또는 새로운 법규에 따른 요구조건 재검토시까지 산림법 제137조(section 137)에

따릅니다.

현재 35개의 벌채허가 또는 거래가 산림법 제137조에 근거하여 갱신 또는 연장되어 현재까지 유효합니다. 거래 종료시 목재에 대한 권리는 자동적으로 관습적 소유주에게 복귀되며, 벌채권리 구매계약(timber rights purchase agreements)사항은 산림경영협약(FMA)으로 대체됩니다.

벌채권리 구매계약(timber rights purchase agreements) 또는 산림경영협약(FMA, Forest Management Agreeent) 절차와 별개로 지방산림지역(LFA, Local Forest area)에서는 산지소유주들이 지주회사(Landowner Companies, LANCO)를 설립하고 산림부장관으로부터 거래를 승인받아 계약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는 계약자와 벌채 및 마케팅협약(Logging and Marketing Agreement, LMA)을 체결하여 지방산림지역 사업을 위한 벌채마케팅을 실시합니다. 계약자는 경영관리자로부터 협약 사항에 대한 승인과 면허(Licence)를 발급받아 벌채와 관련한 활동을 시작합니다.

모든 지방산림지역, 벌채권리 구매계약(timber rights purchase agreements) 또는 산림경영협약(FMA, Forest Management Agreeent)의 목록은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의 산림자원취득정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 30. 산림자원 취득 및 배분 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발대상 산림 조사 2. 산림지역계획 3. 산림자원조사 4. 산리소유자 인지 5. 설립된 지주그룹 문서화 6. 산림경영협약(Forest Management Agreement) 작성 7. 주별산림경영위원회(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 PFMC)의 산림경영협약 인증 8. 산림소유주의 산림경영협약 체결 9.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의 산림경영협약 승인 10. 산림부장관의 산림경영협약 서명 	<p>사업 계획 단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개발조건조사(Development Options Study, DOS) 12. 사업 가이드라인(Project Guideline) 	<p>사업 배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3. 입찰 14. 개발조건조사보고서 및 사업가이드라인 발행 15. 주별산림경영위원회(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s, PFMC)의 사업제안서 평가 16. 주별산림경영위원회(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s)의 제안서 평가보고 17.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의 우선협상대상자 승인 18. 산림부의 개발업자 선정을 위한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의 자문 제공 19. 국가대표협상단 선임 20. 사업협상범위 결정 21. 사업협약안 작성을 위한 협상 22.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의 사업협약 승인 23.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의 이해관계자 자문제공 24. 재무부장관의 사업협약 승인 25.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의 사업협약 체결 26. 보전·환경·보호부(PNG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Protection Authority)의 환경계획 허가 27. 우선협상대상자의 벌채허가 신청 28. 산림부장관의 벌채허가(Timber Permit)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29. 5개년 산림작업계획 제출 30. 연간 벌채계획 제출 31. 벌채승인 	사업 시행 단계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Papua New Guine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ESTRY ACT 1991

Act, Sec. 73
Reg. 118

FORM 115

TIMBER PERMIT

Permit No: PNGFA-TP14- [REDACTED]

I, **Hon. Patrick Pruaitch, MP Minister for Forests**, by virtu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73 of the Forestry Act 1991 and all other powers me enabling, grant a timber permit to [REDACTED] Ltd (in this permit referred to as "the holder").

This permit relates to the project area described in Schedule 1. Pursuant to or as conditions of this permit:

- (1) the amount of allowable cut is as specified in Schedule 2;
- (2) the term is as specified in Schedule 3 or no more than the term of any Forest Management Agreement relating to the project area (whichever is less);
- (3) where the term specified in paragraph (2) and Schedule 3 exceeds ten years, the term and conditions of this permit shall be reviewed by the Board after ten years and on the expiry of every successive period of five years;
- (4) the rates of royalties, levies and charges to be paid are as specified in Schedule 4;
- (5) the infrastructural requirements of this permit are as specified in the accompanying conditions or in Schedule 5;
- (6) this permit is subject to the provision of a performance bond for an amount specified in Schedule 6 which the holder shall lodge within 21 days with the Authority;
- (7) this permit relates to the project agreement specified in Schedule 7;
- (8) this permit is subject to the conditions prescribed in the Regulations;
- (9) this permit is subject to and conditional upon the holder throughout the period of the permit, observing and complying with all standards and practices as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y the Author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N.G. Logging Code of Practice, Procedures for Exporting Logs and Procedures for the identification, scaling and reporting (including royalty self-assessment) on logs harvested from Natural Forest Logging operations or any revisions or replacement documents thereof.

Dated this 13TH day of OCTOBER 2005.


MINISTER FOR FORESTS

NOTE: A PROJECT STATEMENT UNDER SECTION 100 OF THE ACT, A FIVE YEAR WORKING PLAN UNDER SECTION 101 OF THE ACT, AND AN ANNUAL LOGGING PLAN UNDER SECTION 102 OF THE ACT ARE REQUIRED TO BE SUBMITTED TO THE BOARD IN THE PRESCRIBED FORM BEFORE ANY RIGHTS IN THE TIMBER PERMIT MAY BE EXERCISED.

그림 34. 벌채허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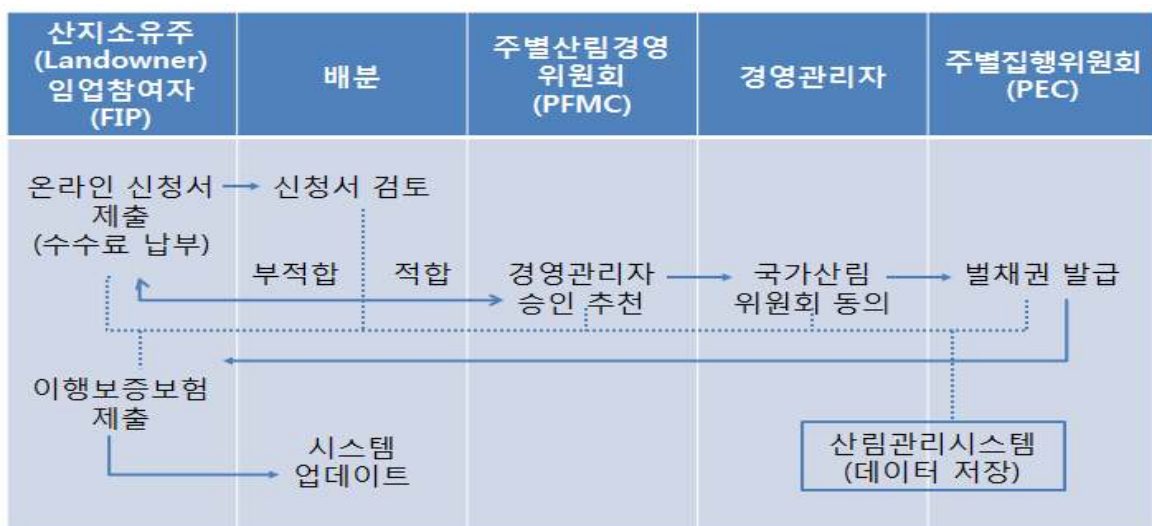
벌채권(Timber Authority, TA)

벌채권(Timber Authority)은 임업 참여자(Forest Industry participants, FIP)가 소규모 지역에서 벌채 권한을 의미하며, 500 ha를 초과하거나 5,000 m³를 초과하여 벌채할 수 없습니다. 50 ha 이하의 산림은 다른 용도로 전환이 가능하며 벌채허가 타당성조사, 가이드라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별산림경영위원회(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s)의 산림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위원장(chairman)이 승인하며, 국가산림위원회(National Forest Board, NFB)가 보증합니다. 벌채권은 주로 소규모 국내 제재업 또는 농업이나 도로건설을 위한 소규모 토지용도변경을 위해 발급됩니다.

최종사용형태와 토지사용형태에 따라 5가지 벌채권(Timber Authority)이 발급됩니다.

- 1) TA-01 : 가장 일반적인 벌채권으로, 내수 또는 수출용으로 연간 5,000 m³ 목재를 벌채하여 가공하는 것을 허가합니다.
- 2) TA-02 : 도로건설을 위한 벌채권
- 3) TA-03 : 농업 및 기타용으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벌채권
- 4) TA-04 : 목재 이외의 임산물을 채취하도록 하는 벌채권
- 5) TA-05 : 조림지에서의 벌채권

TA-01에 따라 벌채한 목재를 수출하려는 경우 반드시 국내에서 가공과정을 거쳐 수출되어야 합니다. TA-02, TA-03, TA-05에 따라 벌채한 목재는 원목 그대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TA-04에 따라 수확한 임산물은 원자재 또는 가공제품의 형태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 PFMC : Provincial Forest Management Committee

* PEC : Provincial Executive Council

그림 35. 벌채권 발급 절차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Papua New Guine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
#country-specific-guidelines)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ESTRY ACT 1991

Act, Sec. 87
Reg. 159

FORM 155

TIMBER AUTHORITY FOR DOMESTIC PROCESSING UP TO 5,000 CUBIC METRES
PER YEAR

Authority No.: TA [REDACTED]
Project Area Name: [REDACTED] TIMBER AUTHORITY

I, Hon. Kila Haida, Chairman of the Committee responsible for forestry matters in the
Central Provincial Government by virtue of the powers conferred by Section 87 of the Forestry Act 1991
and all other powers me enabling, hereby grant a Timber Authority to [REDACTED], a registered
forest industry participant (Registration No. FI [REDACTED] (referred to in this Authority as "the holder").

This Authority authorises the holder to carry out forestry operations in the project area described, and
outlined in red on the map in Schedule 1 ("the Project Area") for the term specified in Schedule 2 subject to
the Act an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 (a) the amount of allowable cut shall be as specified in Schedule 3; and
- (b) the holder must, within 21 days, lodge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98
of the Act for the amount specified in Schedule 4 (and if the performance bond is not
lodged then this Timber Authority is void and of no effect); and
- (c) the holder must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Schedules hereto.

Dated this 15th day of

JULY
2015

2015.


.....
(Signature of Chairman)

그림 36. 벌채권

산림개간권(Forest Clearing Authority, FCA)

산림개간권은 50 ha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 농업 또는 기타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연림(natural forest)을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농업활동 예정지의 산림자원을 상업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산림개간권이 발급되며 개간된 토지의 사용계획은 관련 정부기관에서 허가합니다. 토지·국토계획부(Department of Lands & Physical Planning)는 제안된 토지에 대한 특별농업임차권(Special Agricultural Business Lease, SABL)과 임차권리증서(Lease title)를 개발업자에게 발급합니다.

특별농업임차권 : 토지권리는 토지법(Lands Act, 1996)에 의해 관습적 소유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 제10조, 제11조, 제12조(section)
- 특별농업임차권(SABL) 임차권리증서(Lease title) 승인

특별농업임차권 토지를 농업 또는 도로개발을 위해 대규모로 개간하는 경우 다음의 두 정부기관이 관련사항을 담당합니다.

- 농업축산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Livestock, DAL)는 사업평가, 대중에 대한 자문제공, 농업사업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유관정책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다양한 사안을 담당하는 산하 위원회(Commodity Board)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OPIC는 팜오일용 야자수 사업자를 관리하며 OPRA는 팜오일용 야자수 관련 연구를 담당합니다.
- 건설부(Department of Works)는 국가도로법(National Roads Act)과 기준에 근거하여 사업평가, 자문, 도로건설사업의 승인을 담당합니다.
- 파푸아뉴기니 보전·환경·보호부(PNG Conservation, Environment and Protection Authority, CEPA)는 보전 및 환경보호법(Conservation and Environment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4년 설립되었습니다. 환경위원회(Environment Council)는 토지를 이용하려는 개발업자가 제출한 환경계획과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 Impact Statement)의 타당성을 심의하며, 환경허가(Environment permit)를 발급합니다.
- 산림법(Forestry Act)에 따라 산림개간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절차에는 주별산림경영위원회, 토지소유주,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 제90A조 : 농업관련 사업/투자에 관한 요구 사항

* 제90B조 : 산림개간권(농업)의 절차 및 승인

- * 제90C조 : 주요 도로건설에 관한 요구 사항
- * 제90D조 : 산림개간권(도로)의 절차 및 승인

산림개간권지역에서의 별채는 개간 후 토지사용 시행계획에 따라 관리됩니다.



* NFB : National Forest Board

그림 37. 산림개간권 발급 절차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Papua New Guine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SCHEDULE 1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estry Act 1991.

Act, Sec. 90B(8).
Reg. 263

Form 242

FOREST CLEARING AUTHORITY TO CARRY OUT A LARGE SCALE CONVERSION OF
FOREST TO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DEVELOPMENT.

Forest Clearing Authority No: FCA [REDACTED]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Development Project;

[REDACTED] INTEGRATED AGRICULTURE PROJECT, KAIRUKU DISTRICT, CENTRAL PROVINCE.

Pursuant to Section 90B(8) of the *Forestry Act* 1991, and all other powers it enabling, the Board hereby grants a Forest Clearing Authority to [REDACTED] [FI [REDACTED]] ("the Holder")

This Authority authorises the holder to carry out a large scale forest clearance for commercial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development within the 10,530 hectares of land area described, and outlined in red on the map in Schedule 1 ("the Project Area") for the term specified in Schedule 2 subject to the Act and to the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a) the holder shall, within 21 days, lodge a performance bond¹ in accordance with Section 98 of the *Forestry Act* 1991 for the amount specified in Schedule 3.
- (b) the holder shall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Schedules herein.
- (c) the holder shall carry out the agriculture or other land us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approved land-use development plan and the approved implementation schedule contained in the holder's application for this Authority and as agreed to and as may be varied by the Board from time to time.
- (d) the holder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any Permit, License or other Authority relating to the project and with the provisions of all Environmental and other relevant laws of Papua New Guinea.
- (e) the holder shall comply with such other conditions as are specified in Schedule 4 hereto.

Dated this 29th day of March 2015.


.....
For the Board.

¹ If the Performance Bond is not lodged within 21 days and no application under Section 98(6) of the *Forestry Act* has been made within 21 days to the Board seeking an extension of time within which to lodge the Performance Bond then this Forest Clearance Authority is deemed void under Section 98(5) of the Act and thereby cancelled.

그림 38. 산림개간권

면허(Licenses)

면허는 벌채허가 소지자와 벌채 및 마케팅 사항에 대하여 계약한 임업참여자(Forest industry participant)에게 발급합니다. 벌채허가 소지자는 벌채허가와 관련된 자신의 권리를 계약자에게 이전하므로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는 1년간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산림법 제114조에 따르면 임업참여자(FIP) 또는 임업컨설턴트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임업 활동(Forest industry activities)을 하는 자가 적발되는 경우, 산림부는 이를 기소하고 벌칙을 부과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되는 임업 활동으로는 벌채, 가공, 마케팅, 영업, 선적항까지의 운송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서는 파푸아뉴기니 산림부(PNG Forest Authority Headquarter, Frangipany Street, Hohola, Port Moresby)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웹사이트 (www.forestry.gov.pg)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 (enquires@pngfa.gov.pg)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Papua New Guine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INDEPENDENT STATE OF PAPUA NEW GUINEA
FORESTRY ACT 1991

Act, Sec. 91
Reg. 177

FORM 175

LICENCE

Licence No.: PNGFAL [REDACTED]


[REDACTED] LTD, a registered Forest Industry Participant (Reg. No. FI [REDACTED]) is hereby licensed to engage in the Forestry Industry activities specified in Schedule 1.

This licence is granted for a term of 12 months commencing on the day of 2015 and is conditional on compliance by the license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to which the activities authorised by this licence are related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mpliance with all standards and practices as determined from time to time by the Author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P.N.G. Logging Code of Practice, the Procedures for Exporting Logs and the Procedures for the Identification, Scaling and Reporting (including Royalty Self-assessment) on Logs harvested from Natural Forest Logging Operations or any revisions or replacement documents thereof.

This licence is conditional upon the lodgement of a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Section 98 of the Act in an amount specified in Schedule 2.

The licensee shall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Schedule 3.

Date this 29th day of May 2015


.....
DAVID DOTAONA
CHAIRMAN
FOR THE BOARD

SCHEDULE 1

Forest activities to be conducted under this Licence: Purchasing, harvesting, processing and marketing of Balsa and in the location of the Gazelle Peninsula, ENB Province.

SCHEDULE 2

The amount of the performance bond is **K10,000.00** and must be renewed annually.

SCHEDULE 3

1. This Licence is issued strictly for Balsa activities only and not to be used to purchase and sell any other forest produce/products.
2.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the term of this Licence must be lodged with the Authority prior to the expiry date.

그림 39. 벌채허가 소유자와의 계약사항에 근거한 면허

생산·유통·수출 관련 사항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천연림(natural forest)을 보호하고자 다음 수종에 대한 원목 형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표 27. 원목 수출 금지 수종

일반명(Common name)/ 상업명(Trade name)	약어(Abbreviation)	학명(Botanical name)
Kauri Pine	AGA	<i>Agathis sp.</i>
Hoop Pine	ARH	<i>Auracaria cunninghamii</i>
Klinkii Pine	ARK	<i>Auracaria hunsteinii</i>
Celery-Top Pine	CLP	<i>Phyllocaladus hypophyllus</i>
Cordia	COR	<i>Cordia dichotoma</i>
Dacrydium	DAC	<i>Dacrydium nidulum</i>
Ebony	EBO	<i>Diospyros ferrea</i>
Kerosene wood	KEW	<i>Cordia subcordata</i>
Libocedrus	LIB	<i>Libocedrus pauanus</i>
Podocarp	POD	<i>Podocarpus sp.</i>
Brown Podocarp	POB	<i>Decussocarpus swalichianus</i>
Highland Podocarp	POH	<i>Dacrycarpus imbricatus</i>
Rosewood	ROS	<i>Pterocarpus indicus</i>
Balsa	BAL	<i>Ochroma lagopus</i>
Blackbean	BLB	<i>Castanospermum australe</i>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증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2호)

파푸아뉴기니에서 인정하는 비정부 조직에 의한 인증체계로는 FSC, PEFC, SGS 다음과 같습니다.

표 28. 목재 합법성 체계 및 기준

목재합법성 체계 (Timber Legality Framework)	기준
FLEGT(EU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ment and Trade)	목재제품의 거래를 위한 FLEGT 면허체계 (초안 작성중)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 국가산림경영기준 -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기준 - Controlled Wood 회사 평가 기준 - 산림경영기업을 위한 Controlled Wood 기준
PEFC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che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인증(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임산물제품인증(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기준
PNG SGS TLTV(Timber Legality and Traceability Verification)	파푸아뉴기니 목재합법성 및 이력추적 확인 (시장 수요 부족으로 중단됨)

[참고]

출처 : memberportal.fsc.org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37,575 ha이며 CoC 인증은 2 건입니다.(2017. 10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memberportal.fsc.org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s://info.fsc.org/> 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인증을 취득한 산림면적은 0 ha이며 CoC 인증은 1 건입니다.(2017. 9월 기준) 자세한 내용은 www.pefc.org/about-pefc/who-we-are/facts-a-figures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출업자가 제공하는 인증서는 <http://www.pefc.org/find-certified>에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FSC 인증 마크 >



< PEFC 인증 마크 >

[참고]

출처 : www.sgs.com

SGS는 검사·검증·시험·인증 기업이며, 산림 분야에 대한 제3자 인증기관으로 FSC, PEFC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GS에서 제공되는 인증서의 경우 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하여 인증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www.sgsgroup.kr/ko-kr/verify-sgs-documents>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사항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2항제4호)

파푸아뉴기니에서 수출되는 원목의 모니터링은 산림부에서 산림법(Forestry Act)제1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87조, 제88조에 근거하여 목재수출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원목수출절차는 다음의 사항을 규정합니다.

- 원목수출업자가 원목수출선적을 위한 가격 승인을 취득하는 절차
- 원목수출업자가 원목수출허가(export permit)와 면허(licence)를 취득하는 절차
- 원목수출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한 절차적 조건 사항

파푸아뉴기니 정부는 Societe Generale de Surveillance(SG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SGS사로 하여금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에서 시행하는 원목의 수출감독 및 관리절차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독립적인 모니터링으로 수출량, 수출액, 수출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사항이 정확하게 고지되어 지급되었습니다.

SGS PNG는

- 중간 야적장(log landing)에서 원목의 검척시 각 원목의 말구 부분에 부착하는 태그(tag)를 제공합니다.
- 수종을 확인하고 선적 전 검사를 수행합니다.
- 작업장에서의 선적작업을 모니터링하여 수종과 실제 선적량을 확인합니다.
- 취합된 선적정보를 대조하며 파푸아뉴기니에 월별 보고를 수행합니다.

SGS는 다음의 자료를 원목 수출업자에게 제공합니다.

- 원목수출절차 복사본
- 파푸아뉴기니 산림부 원목 태그(tag)
- 파푸아뉴기니 산림부 공식 원목검척표(log scaling sheet)

원목과 목재제품을 파푸아뉴기니로부터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업자는 산림부로부터 수출허가서(Export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산업통상부(Department of Trade, Commerce and Industry)로부터 수출허가(Export Permit)를 취득해야 합니다. 수출허가서(Export permit)의 발급은 세관금지규정(Customs Prohibition Regulation)의 요구 사항이나 산림부 장관에게 위임되어 관리됩니다.

모든 수출업자는 원목과 목재제품의 수출허가 신청서를 해당 지역의 파푸아뉴기니 산림부 사무소에 제출하고 검사결과(Inspection repor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원목과 목재제품의 수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 29. 원목 수출 절차

1	(수출업자)원목에 태그(tag) 부착
2	(수출업자)파푸아뉴기니 산림부에 가격승인(price endorsement) 신청
3	(수출업자)구매자와 거래계약 체결
4	(수출업자)수출허가(Export permit) 신청서 및 면허추천서 제출
5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수출허가 및 면허추천 절차
6	(수출업자)SGS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선적대상물품을 통지
7	(수출업자)SGS를 통해 원목 선적을 위한 사전준비
8	(수출업자)선적예정 원목에 대한 명세서 작성
9	(SGS)수출신고한 원목에 대한 조사
10	신고서와 조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SGS와 수출업자간 협의 및 확인
11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선적승인 발행
12	(SGS)선적된 원목의 수량 및 부피 정보 기록
13	(SGS)조사보고서 작성
14	(수출업자)선박 운항을 위한 선적자료 작성
15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승선감독관(boarding officer)선적문서와 SGS 조사보고서 대조
16	(수출업자)선적 후 문서를 SGS에 제출
17	(SGS)월단위 선적보고서

■ China ■ India ■ Japan ■ Korea ■ Philippines ■ Singapore ■ Taiwan ■ Vietn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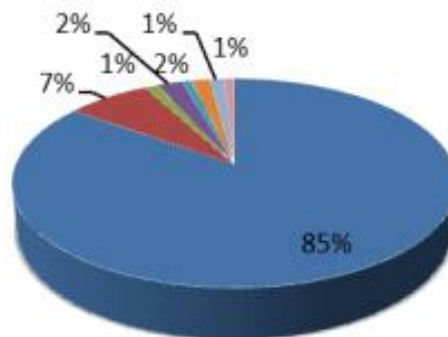


그림 40. 원목 수출 시장

기타 목재제품(제재목, 합판 등)과 임목부산물(minor forest products)(등나무, rattan)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업자는 수출허가서(Export permit)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원목 수출 절차 >

1	(수출업자)목재제품의 확인 및 수수료 납부
2	(수출업자)파푸아뉴기니 산림부 현장사무소에 수출의향 알림
3	(파푸아뉴기니 산림부 담당관)해당 선적 대상제품 검수(내역 및 수량 확인)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제품의 수출허가 추천
4	(수출업자)파푸아뉴기니 산림부에 수출허가 신청
5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신청서 내용을 기록 및 검토
6	(파푸아뉴기니 산림부)신청서 처리 후 EAB, DPA의 담당관이 승인
7	(파푸아뉴기니 산림부)EAB를 통해 수출허가 발급

또한 산림법 제41조에 근거하여 파푸아뉴기니 산림부는 산림감독관으로 하여금 포장된 화물의 내용물과 수출허가신청 사항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감독관은 신청서에 표시된 원목과 목재제품이 지정된 허가지역으로부터 벌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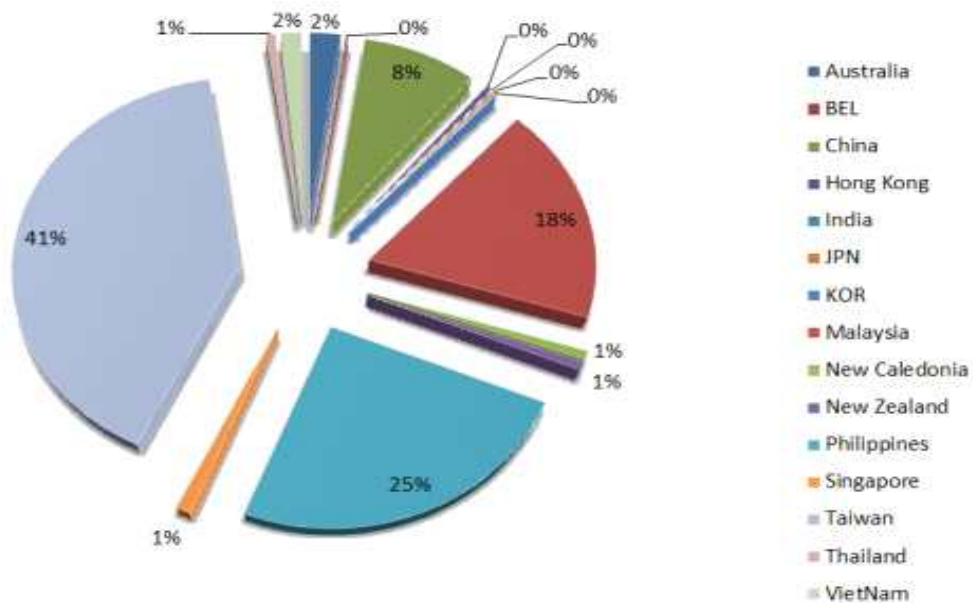


그림 41. 가공 목재제품의 시장점유율

[참고]

출처 : Country specific guideline for Papua New Guinea,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Water Resources

(www.agriculture.gov.au/forestry/policies/illegal-logging/information-resources#country-specific-guidelines)



MINISTER FOR FORESTS

To: Manager
Customs Office
P.O. Box 215, MADANG
Madang Province.

CUSTOMS (Prohibited Exports) REGULATION
CHAPTER No. 101 (Reg. Sec:2)

Our file reference:

Wednesday, 29 October 2014

Export Permit No. [REDACTED]

I, Hon. Douglas Tomuriesa, MP and Minister For Forests hereby consent to the exports of the following forest produce.

Exporter: [REDACTED]
Producer: [REDACTED]
TP/TL/TA/LFA/FCA No: TA [REDACTED]
Project: [REDACTED]
Quantity (m3): 16,579 Sawm Kwi
Value (USD): 17,175.60
Species: As attached
Loading Ports: Madang
Vessel: Kokopo Chief
Departure Date: 23-Nov-14
Destination: Australia
Buyer: [REDACTED] BRISBANE, Australia



Export Licence:

*Hon. Douglas Tomuriesa MP,
Minister for Forests*

PO BOX 5055, BOROKO, NATIONAL CAPITAL DISTRICT, PAPUA NEW GUINEA
Telephone: (675) 327 7342 (Parliament) / 327 7918 / 920 (HQ Hohola)
Facsimile: (675) 327 7480 (Parliament) / 325 5457 (HQ Hohola)

그림 42. 수출허가서

담당자 연락처

- 성명 : Alois Jenkihau
- 소속 : Policy & Aid Coordination Branch Forest Policy & Planning Directorate PNG
Forest Authority
- 전화번호 : + 675 - 327 - 7842
- e-mail : ajenkihau@pngfa.gov.pg
- website : www.forestry.gov.pg